Deloitte.

베트남 세무 및 관세 뉴스

2021년 1월

주목할 만한 내용

01. 조세관리

- 2020년 국고예산 징수 및 세무 조사/감사 진행현황 요약;
- 세무등록에 대한 신규 시행규칙;

02. 법인소득세 (CIT)

- 보상 상품에 대한 CIT 정책;

03. 부가가치세 (VAT)

- 제 32/2011/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발행된 전자 인보이스인 (E-Invoice) 경우 종이 인보스 (Paper Invoice) 로 전환이 가능함;
- 기업이 다양한 VAT세율을 적용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VAT 세율;
- 교육사업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VAT 5% 적용 조건;

04. 외국인 계약자세 (FCWT)

- 베트남 외에서 수행되 지만 베트남 내에서 소비된 서비스에 대한 FCWT;
- 베트남 근로자에 대해 외국회사에 지급된 보험료;
- 제3자를 통해 인력 제공 서비스;
-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FCWT;
- 외국인 계약자에게 전문가에 대한 비용의 상환은 FCWT 부과되지 않음 ;

05. 무역 및 관세

- 중국에서 수입된 냉간 강철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덤핑 방지 관세 (anti-dumping duty) 가 공식적으로 부과됨;
- 세금 부과 결정에 따른 수입 VAT의 연체이자는 공제가 안 됨;
- 수출 신고서상 수량 및 단위의 신고에 대한 안내;
- 전부 임가공 아웃소싱의 경우 수입 원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조건 ;
- 산업무역부의 수입품에 대한 지침의 주목할 만한 내용;
- 자체 발급된 CO는 REX 코드 부족으로 인해 거부되지 않음;
- 베트남 및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UKVFTA")은 체결되어 발효되었음.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

조세관리

2020년 국고예산 징수 및 세무 조사/감사 진행현황 요약:

총 징수 액 :

2020년의 총 국고 예산 징수액은 VND 1,278,649 billion을 달성했으며 2020년 계획 대비 101.9%에 해당한다.

세무 감사/ 조사 및 환급 현황 :

세무 감사/조사 현황: 2020년에 조세당국은 83,979 케이스의 납세자 현장에서 감사/조사를 실시해왔으며 계획 대비 90.82%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

- 세무 감사/조사를 통해 징수액은 VND 19,867 billion을 증가하고, 공제 세액은 VND 2,248 billion 및 손실액은 VND 49,761 billion을 감소했다;
-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 현장에서 338 케이스의 세무 감사/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세금 징수액은 VND 681 billion을 달성했고 손실액은 VND 10,046 billion을 감소했다. 그 중에서, 정상가격을 재평가를 통해 VND 361 billion을 징수되었고 VND 3,874 billion의 손실액이 감소되었다.
- VAT 환급: 2020년 12월 31일까지 환급세액은 VND 137,090 billion을 달성했으며 2020년 계획 대비 105.45% 에 해당한다.

(GDT의 2020년 보고서의 요약)

세무등록에 대한 신규 시행규칙

재무부는 2019년 6월 13일짜 제38/2019/QH14호 조세관리법 및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2020년 10월 19일짜 제126/2020/NĐ-CP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세무등록에 대해 안내하는 2020년 12월 03일짜 제105/2020/TT-BTC호 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본 시행규칙은 조세당국에 세무등록을 직접 진행해야 한 대상자, 세금 코드의 구조, 세무등록에 관한 서류, 절차 및 양식 (즉, 초기등록, 세무등록증 발급, 세금코드 통지, 세무등록 정보 변경에 대한 통지, 영업 활동 정지 통보, 세금코드를 무효화/ 회복 신청, 기업 또는 조직의 재활동 시 세무등록 등과 같은 경우를 포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세무총국은 본 시행규칙의 주목할 만한 신규사항을 소개하는 2021년 01월 08일짜 제No.54/TCT-KK 호 OL를 발표하였다.

본시행규칙은 2021년 01월 17일부터 발효된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Deloitte.

법인소득세

지침 문서

보상 상품에 대한 CIT 정책

고객에게 상품으로 보상할 때 기업은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상품판매와 같이 VA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VAT 부과되지 않은 상품인 경우 인보이스에 판매가격기준은 대금지금 가격으로 기술하고 VAT세율 및 금액기준은 삭제해야 한다.

보상 상품에 대한 구매 비용은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용이정이 된다.

(하노이 세무국에 2021년 1월 4일 제141/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부가가치세

지침 문서

제 32/2011/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발행된 전자 인보이스인 (E-Invoice)의 경우 종이 인보스 (Paper Invoice) 로 전환이 가능함

제123/2020/ND-CP호 시행규칙의 발행일인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도록 조세당국이 전환요청에 대해 아직 통지하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제51/2010/ND-CP호 및 제04/2014/ND-CP 호 시행령 및 기타 지침문서에 따른 인보이스에 관한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예전 양식으로 전자 인보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제32/2011/TT-BTC호 싱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종이 인보이스로 전환해야 한다.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전환된 종이 인보이스의 경우 판매자의 날인이 필요하지만 회계 보관 목적으로 하면 판매자의 날인이 필요가 없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 12월 28일 제 110285/CTHN-TTHT호 OL)

기업이 다양한 VAT세율을 적용된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VAT 세율

기업이 다양한 VAT세율을 적용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상품/ 서비스의 종류별로 규정된 VAT세율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상품/ 서비스 종류별로 세율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제219/2013/TT-BTC호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최고 VAT세율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월 5일 제282/CTHN-TTHT호 OL)

교육사업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VAT 5% 적용 조건;

교육사업을 위한 수입품의 경우, 5% VAT를 적용하기 위해 학교 및 연구원과의 상품/서비스의 제공/판매 계약을 제출해야 한다.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6조 5항)

(관세당국의 2021년 1월 8일 제85/TCHQ-TXNK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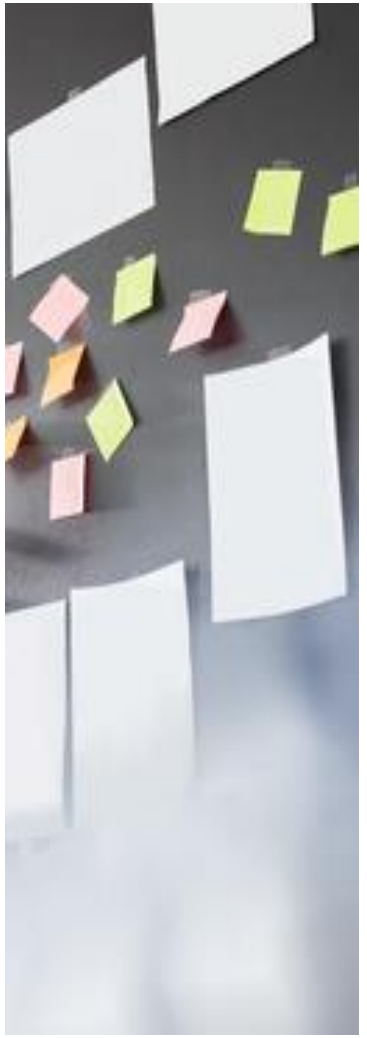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외국인 계약자세

지침 문서

베트남 밖에서 수행되 지만 베트남 내에서 소비된 서비스에 대한 FCWT

한국에 소재한 본사가 있는 회사는 해외 은행의 요청에 따라 자본 대출 거래와 관련 서류 작성. 준비 지원 서비스 및 해외 은행과 기업 간의 대출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는 베트남밖에서 수행되지만 베트남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국회사가 상기 서비스를 통해 얻은 소득은 CIT 5% 및 VAT 5%의 FCWT가 부과된다. 베트남 회사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2020 년 11 월 20 일 Dong Nai 세무국의 제11846/CT-TTHT호 OL)

베트남 근로자에 대해 외국회사에 지급된 보험료

외국 모회사가 베트남 자회사의 법인장에 대한 책임보험료를 해외 보험사에 지급한 후에 베트남 자회사에 청구한 경우 모회사가 베트남에서 FCWT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베트남 자회사는 FCWT를 원천징수하고 외국 모회사를 대신하여 세금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0년11월05일 제3204/CT-TTHT호 OL)

제3자를 통해 인력 제공 서비스

베트남 회사는 외국 회사 (외국인 계약자)와 인력채용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 계약자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한 후에 베트남회사에 청구하면 외국인 계약자의 해당 소득은 제103/2014/TT-BTC호 시행 규칙 제1조 4항에 따라 FCWT이 부과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0년12월28일 제29533/CT-TTHT호 OL)

외국인 계약자에게 전문가에 대한 비용의 상환은 FCWT 부과되지 않음

외국기업이 베트남회사와의 인건비 분담 및 상환 합의서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한 경우 외국기업이 이 계약으로 인해 얻은 소득은 FCWT가 부과된다.

이는 외국기업과 베트남회사간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후 비용을 상환하는 관계이면 FCWT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세무총국의 2020년 12월 16일짜 제5333호/GSO-CS호 OL 및 재무부의 2014년12월9일짜 제17862/BTC-GSO호 OL)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외국인 계약자와 고객 모색, 상품광고 및 마케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터넷 광고 및 마케팅 제외), 외국인 계약자가 해외에서 수행된 해당 서비스로 인해 얻은 소득은 제103/2014/TT-BTC호 시행 규칙 제2조 4항에 따라 FCWT이 부과되지 않다.

(Dong Nai 세무국의 2020년12월13일 제12492/CT-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중국에서 수입된 냉간 강철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반덤핑 관세 (anti-dumping duty) 가 공식적으로 부과됨

중국 원산지 냉간 강철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20 년 12 월 28 일부터 5 년 동안 공식적으로 부과되는데 다음 제품을 제외한다: 냉간 압연강철; 실리콘 전기 도금 강철 (전기 공학 강철); 주석으로 압연된 흑색강철 (흑색 골판지 철); 바람 강철; 파형 강철; 코팅 냉간 압연 강철.

제조업체에 따라 최저 반덤핑 관세율이 4.43%이고 최고 관세율이 25.22%로 적용된다.

(산업통상부의 2020년12월21일 제3390/QC-BCT호 결정)

세금 부과 결정에 따른 수입 VAT의 연체이자는 공제가 안 됨;

현행 규정상 관세당국의 세금 부과 결정에 따라 납부된 VAT 금액은 세금 사기 및 탈세 행위로 인한 부과의 경우를 제외 전액 공제 가능한다.

다만,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 VAT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공제 규정이 없다.

(관세총국의 2020년12월21일 제7974/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Deloitt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cont.)

전부 임가공 아웃소싱의 경우 수입 원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조건

제107/2016/QH13호 법령 제16조 6항에 따라 임가공을 아웃소싱하는 기업 (전체 임가공 아웃소싱의 경우 포함)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위한 수입 원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임가공을 아웃소싱한 기업은 가공 시설, 임가공 아웃소싱 시설, 가공 계약서 및 임가공 아웃소싱 계약서를 관세당국에 통지했음;
- 통지는 원자재료를 첫번째 수입하기 전과 임가공 아웃소싱 받은 기업에 전달하기 전에 진행해야 함.
- 임가공 아웃소싱을 받은 기업의 시설에 대한 검사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됨) 결과는 가공시설 조건을 마족한 것으로 확인됨.

(관세총국의 2020년12월23일 제8050/TCHQ-GSQL호 OL)

자체 발급된 CO는 REX 코드 부족으로 인해 거부되지 않음

관세총국의 지침에 따르면 EU수출자에 의해 자체 발급된 CO는 EU당국의 웹사이트에 재화 또는 REX코드 만료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된 이유로 거부되지 않다.

EU 수출자의 REX 코드에 대한 감사는 2020년10월05일 제6464/TCHQ-GSQL호 OL 및 2020년12월08일 제7735/TCHQ-GSQL호 OL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EU 수출자가 재화 및 REX 코드의 만료일에 대해 제사한 정보를 EU당국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을 거부한 경우 EU당국의 웹사이트에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관세총국의 2020년12월24일 제8064/TCHQ-GSQL호 OL)

영국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 ("UKVFTA")은 체결되어 발효되었음.

UKVFTA는 2020년12월29일에 런던에서 체결되었으며 EU –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 ("EVFTA")의 협의내용을 계승했다. 베트남 정부의 2020년12월31일 제190/NQ-CP호 결의에 따라 UKVFTA는 2021년1월1일부터 일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제190호 결의는 UFVFTA의 2021년1월1일부터 일시적인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행하도록 산업통상부 및 재무부를 포함한 유관기관 및 관련부에 지정한다.

베트남에서 영국시장으로 수출된 재화의 경우 수출자는 EU정부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일반특례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재화의 C/O가 A양식으로 발급되어야 GSP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의 2020년12월31일 제190호 결의; UKVFTA 협정)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판매 등 산업 목적이 아닌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